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26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6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의 신청자격 및 사업비 계상기준을 완화하고, 성실성 검증 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평가 운영 근거 마련(제2조, 제9조 ①항)

- '온라인평가' 용어 정의 신설 및 온라인평가를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평가위원의 선택에 따른 과제별 평가위원회 구성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별도 관리지침을 준용하도록 단서 조항 추가

나.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 완화(제8조 ③항)

- 부채비율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에도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한 기업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다. 성실성 검증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제11조 ①항)

- 성실수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성실성 검증위원회 도입에 따라 평가위원회·전문위원회 심의 사항에 성실성 검증 추가

라. 과제책임자 기준 완화(제38조 ①항)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원들도 과제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마. 산학연협력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제2조, 제37조 ②항)

-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대학·연구기관의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기본 요건 마련*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전담 매니저 채용(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자격증 소지자 우선 채용 가능), 정관 제정·운영, 운영계획서 및 운영결과 제출 의무

바. 사업비 계상기준 완화(별표1)

- 신규채용연구원의 범위를 사업 공고일 3개월에서 6개월이전에 채용한 연구원까지 인정하도록 기준 확대

사.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 정비(별표3)

- 각 과제에 대해 다수 기업·기관이 참여함에 따라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대상을 명확화

-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제재기준 및 근거를 마련

* ① 지원결정을 조건으로 결정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기업과 제3자가 계약한 경우, ② 사업수행 주체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기업 평가시 동행하여 사업에 대해 관여하는 경우

3. 의견제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98,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전화 : 042-481-4442, Fax : 042-472-3289)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평가위원회”란 과제의 도출 및 선정·단계·최종 평가와 <u>진도점검</u> , 협약의 변경·해약, 문제과제를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10. ----- ----- - <u>진도점검, 성실성 검증</u> ----- -----, -----,
11. ~ 18. (생략)	11. ~ 18. (현행과 같음)
19. “기술료”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 성공인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u>금액</u> 으로서 <u>현금 또는 유가증권</u> 등을 말한다.	19. ----- ----- ----- ----- ----- ----- ----- <u>금액</u> ----- -----,
20. ~ 24. (생략)	20. ~ 24. (현행과 같음)
<신설>	25. “ <u>온라인평가</u> ”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선정평가

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

----- 의결기업, 창업 3년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7. ~ 10. (생략)

7. ~ 10.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9조(과제선정평가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지원과제 선정을 위하여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선정평가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별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단서 신설>

제9조(과제선정평가 등) ① -----

----- 한다. 단, 온라인평가를 적용하는 사업은 평가위원의 선택에 따라 과제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별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

제11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
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설>

6. (생략)

② ~ ⑤ (생략)

제19조(사업비의 조성) ①·②
(생략)

③ 민간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
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은 현물로 부
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 3. (생략)

4. 대학, 국립·공립연구기관 소
속 정규직원의 인건비

5. (생략)

④ (생략)

제37조(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의
유무, 설치, 운영 등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과제의 성실수행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한 성실성 검증위원
회 심의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업비의 조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4. (현행 제5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산학
연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하려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 설>

제38조(과제 책임자) ① 과제책임자는 해당 기술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로 해당 분야에 대한 개발경험과 개발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준수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을 전달하는 담당자 1명 이상을 채용하여야 하며,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목적과 업무가 명시된 정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는 매년 운영계획서 및 운영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은 동 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위탁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는 제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관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38조(과제 책임자) ① -----

<단서 신설>

<신 설>

1. ~ 6. (생 략)

② (생 략)

③ ~ ⑤ (생 략)

부 칙

<신 설>

[별표 1]

기술개발사업비 비목별 계상 기준
(제20조제1항 관련)

----- 한다.

다만, 과제책임자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검입 또는 검직을 허가한 경우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에는 주관기관 소속 원칙의 예외로 한다.

② 과제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별표 1]

기술개발사업비 비목별 계상 기준
(제20조제1항 관련)

구분		사용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적립비	인건비	해당 기술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p>1. 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기술개발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p> <p>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기술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p> <p>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기술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기술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 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기술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기술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p> <p>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p>

구분		사용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적립비	인건비	해당 기술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p>1. 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기술개발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p> <p>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기술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p> <p>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기술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기술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 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기술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기술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p> <p>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p>

		<p>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p> <p>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p> <p>나.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세부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p> <p>다. 세부사업별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학생 인건비	<p>해당 기술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 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p>	<p>1. 해당 기술개발과제 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p> <p>2. 참여율 100퍼센트 를 기준으로 미래 창조과 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p> <p><참고>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 및 박사이상 외부인건비 적용기준 (100%참여시) · 월정액 : 학사과정</p>

		<p>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p> <p>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p> <p>나.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세부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단, 연 2회 이상 신청을 받는 사업의 경우 2회자 신청부터는 접수공고일 기준으로 적용)</p> <p>다. 세부사업별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학생 인건비	<p>해당 기술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 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p>	<p>1. 해당 기술개발과제 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p> <p>2. 참여율 100퍼센트 를 기준으로 미래 창조과 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p> <p><참고>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 및 박사이상 외부인건</p>

		(1,000,000원), 석사과정(1,800,000원), 박사과정(2,500,000원), 박사후연구원(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름)
연구장비·재료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기술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연구 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연구활동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전문가 활용비, 국내의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기술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술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비 적용기준 (100%참여시) +월정액 : 학사과정(1,000,000원), 석사과정(1,800,000원), 박사과정(2,500,000원), 박사후연구원(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름)
연구장비·재료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기술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연구 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연구활동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전문가 활용비, 국내의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 	기술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술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기술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직접비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하며 제26조제7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을 수 있다. 2. 국내 출장여비는 기술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에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해당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제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하되,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만 함	
	기술개발의 일부들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기술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기술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과제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개 또는 여러개의 연구실을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

연구 과제 추진비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기술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직접비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하며 제26조제7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을 수 있다. 2. 국내 출장여비는 기술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에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수당	해당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제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하되,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만 함
	위탁연구개발비	기술개발의 일부들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기술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기술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과제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p>육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p> <p>나. 연구개발능력성 과급: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력성과급</p> <p>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동지원 경비: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동지원경비</p> <p>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p> <p>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p> <p>라. 연구보안관리비: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지(任置) 관련 비용 등 기술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p> <p>다. 연구윤리활동비: 기술개발과제</p>	<p>(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p> <p>3.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 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p> <p>4.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p>
--	---	---

	<p>위한 인력(한개 또는 여러개의 연구실을 육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p> <p>나. 연구개발능력성 과급: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력성과급</p> <p>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동지원 경비: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동지원경비</p> <p>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p> <p>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p> <p>라. 연구보안관리비: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지(任置) 관련 비용 등 기술개발과제 보안을 위</p>	<p>위한 인력(한개 또는 여러개의 연구실을 육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p> <p>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p> <p>3.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 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p> <p>4.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p>
--	---	---

	<p>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화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 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p> <p>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정제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연가, 박사 후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p> <p>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p> <p>아. 대학의 기술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p>
--	---

	<p>한 필요경비</p> <p>다. 연구윤리활동비: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화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 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p> <p>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정제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연가, 박사 후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p> <p>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p>
--	--

		<p>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p> <p>3. 성과활용지원비</p> <p>가. 과학문화활동비 : 기술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p> <p>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연도에 수행 기관에서 수행하는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지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화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p> <p>다. 기술개발 결산 및 사업화 성과 평가, 회계 감사비용 등에 필요한 비용</p>
--	--	---

[별표 2]	
위탁연구기관의 범위(제 34조제2항)	
1. 국립·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p>아. 대학의 기술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p> <p>3. 성과활용지원비</p> <p>가. 과학문화활동비 : 기술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p> <p>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연도에 수행 기관에서 수행하는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지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화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p> <p>다. 기술개발 결산 및 사업화 성과 평가, 회계 감사비용 등에 필요한 비용</p>
--	--	---

[별표 2]	
위탁연구기관의 범위(제 34조제2항)	
1. 국립·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계기술원 등)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KOTIT시험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5.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계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5.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7.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7.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다른 기능대학
9.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1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1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12.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각 사업에서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다른 기능대학
9.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KOTIT시험연구원, 등)
1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1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12.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각 사업에서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별표 3]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
(근거조문 : 제17조, 제30조, 제31조, 제46조)

※ 참여제한 합산기준 : 아래 각호 또는 각호내 참여제한 사유별로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되,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가. 연구개발과정을 본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3년	전액
나.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할 책임	1년	환수하

[별표 3]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
(근거조문 : 제17조, 제30조, 제31조, 제46조)

※ 참여제한 합산기준 : 아래 각호 또는 각호내 참여제한 사유별로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되,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참여제한 대상 : 문제과제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사람, 즉 해당자에게만 참여제한 조치를 취함

※ 출연금 환수 대상 : 문제과제에 지원한 해당 귀책기관의 정부출연금에 환수 대상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가. 연구개발과정을 본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3년	전액
나.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할 책임	1년	환수하

이 있는 자가 이를 제출리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지 않음
다. 부도·폐업·파산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1년	전액이내 ¹⁾
라.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1년	전액이내 ²⁾
마. 연구개발과정은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음
바. 정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정책상 중단된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음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의 경우 투자기업이 시장변화 등 정당한 사유에 따라 기술개발 및 투자계획을 철회하여 중단된 경우 포함	면제	환수하지 않음
사. 기타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관에 없음	면제	환수하지 않음
¹⁾ 파산의 경우 법원의 채무계획 상환분의 결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 할수 있음		
²⁾ 영업장의 폐쇄·매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에서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있는 자가 이를 제출리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지 않음
다. 부도·폐업·파산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1년	전액이내 ¹⁾
라.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1년	전액이내 ²⁾
마. 연구개발과정은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음
바. 정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정책상 중단된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음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의 경우 투자기업이 시장변화 등 정당한 사유에 따라 기술개발 및 투자계획을 철회하여 중단된 경우 포함	면제	환수하지 않음
사. 기타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관에 없음	면제	환수하지 않음
¹⁾ 파산의 경우 법원의 채무계획 상환분의 결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 할수 있음		
²⁾ 영업장의 폐쇄·매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에서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정당한 결과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 위
가.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	전액
나.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5년	전액
다. 그 밖에 보안관리, 비밀준수, 청렴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2. 정당한 결과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 위
가.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	전액
나.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5년	전액
다. 그 밖에 보안관리, 비밀준수, 청렴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정의 수행을 포기하면서 출연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정의 수행을 포기하면서 출연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 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면서 출연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3년	전액
나. 정당한 사유로 인한 과제수행의 자발적 중단을 평가 위원회에서 인정 한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음
다.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정박, 유행병 등) 등 '외적인 요인'으로 주관기관이 과제수행 포기 또는 협약해약을 요청한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음
라. 출연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음

4.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 등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과제종료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 위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사업비 현금의 20%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해당 금액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사업비 현금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해당 금액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사업비 현금의 30%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해당 금액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 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1년 이내	환수하지 않음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 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면서 출연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3년	전액
나. 정당한 사유로 인한 과제수행의 자발적 중단을 평가 위원회에서 인정 한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음
다.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정박, 유행병 등) 등 '외적인 요인'으로 주관기관이 과제수행 포기 또는 협약해약을 요청한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음
라. 출연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음

4.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 등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과제종료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 위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사업비 현금의 20%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해당 금액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사업비 현금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해당 금액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사업비 현금의 30%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해당 금액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 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개인사업	1년 이내	환수하지 않음

제외)		
6.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 위
가. 연구과제 수행 관련 자료·결과 등을 위조·변조 또는 표절하거나 논문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경우	3년	전액
나. 연구개발 진도보고서, 최종 보고서 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진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3년	전액
다. 외부 압력, 중부 수행, 기(既) 개발품 신청,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년	전액
라. 민간투자연계사업의 경우 투자기관이 투자금 조기회수 등 투자를 철회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음
마. 투자연계 과제를 추진하면서 연구개발을 주관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투자기관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약을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음
1) 피투자기업이 투자당시 공개기업이면서 투자기관이 인수한 주식을 1년 이내에 시장에 매각하는 경우	해당 투자기관	환수하지 않음
2) 사전 승인 없이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하는 경우(투자연계과제 운영관리지침에 의한 투자적격기관에 양도 또는 변경한 경우에 한함)	2년 주관기관 및 해당투자기관 1년	환수하지 않음
3) 투자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음
가) 귀책사유가 주관기관에 있는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나) 귀책사유가 해당투자기관에 있는 경우	해당 투자기관	환수하지 않음

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제외)		
6.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 위
가. 연구과제 수행 관련 자료·결과 등을 위조·변조 또는 표절하거나 논문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경우	3년	전액
나. 연구개발 진도보고서, 최종 보고서 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진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3년	전액
다. 외부 압력, 중부 수행, 기(既) 개발품 신청, 청탁, 제3자 부당개입 ¹⁾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년	전액
라. 민간투자연계사업의 경우 투자기관이 투자금 조기회수 등 투자를 철회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음
마. 투자연계 과제를 추진하면서 연구개발을 주관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투자기관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약을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음
1) 피투자기업이 투자당시 공개기업이면서 투자기관이 인수한 주식을 1년 이내에 시장에 매각하는 경우	해당 투자기관	환수하지 않음
2) 사전 승인 없이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하는 경우(투자연계과제 운영관리지침에 의한 투자적격기관에 양도 또는 변경한 경우에 한함)	2년 주관기관 및 해당투자기관 1년	환수하지 않음
3) 투자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음
가) 귀책사유가 주관기관에 있는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나) 귀책사유가 해당투자기관에 있는 경우	해당 투자기관	환수하지 않음

4) 체결된 투자계약이 사실상 무효화(가장납입 등) 되거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1년 주관 기관 및 해 당주 자기 관 3 년	전액 ¹⁾
5) 체결된 투자계약이 기술개발기간 내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 ²⁾ 또는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	주관 기관 및 해 당주 자기 관 3 년	전액 ¹⁾
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사.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협약서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따르지 않은 경우	1년	해당금액
아. 협약이후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으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제	전액

¹⁾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이 주관기관(참여기관 등)의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협약해약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양도된 경우는 제외
²⁾ 투자기관의 참여제한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의 투자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제한
³⁾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7.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된 게을리한 경우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 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재산 조사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	해당금액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	2년	해당금액

4) 체결된 투자계약이 사실상 무효화(가장납입 등) 되거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기관 1년 주관 기관 및 해 당주 자기 관 3 년	음 전액 ³⁾
5) 체결된 투자계약이 기술개발기간 내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 ⁸⁾ 또는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	주관 기관 및 해 당주 자기 관 3 년	전액 ²⁾
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사.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협약서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따르지 않은 경우	1년	해당금액
아. 협약이후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으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제	전액

¹⁾ 제 3자 부당개입 사례
- 지원결정 조건으로 결정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기업과 제3자가 계약한 경우
- 사업수행 주체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기업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시 동행하여 사업에 대해 언급하는 등 기업 실태조사, 평가에 관여하는 경우

²⁾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이 주관기관(참여기관 등)의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협약해약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양도된 경우는 제외
³⁾ 투자기관의 참여제한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의 투자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제한
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7.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된 게을리한 경우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 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재산 조사결과 실익이 있다고	2년	해당금액

<p>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로서 기술료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p> <p>다. 부도·폐업·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¹⁾</p> <p>1) 부도, 폐업, 파산의 경우²⁾</p> <p>2) 영업장이 폐쇄·멸실된 경우</p> <p>3)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없는 경우</p> <p>4) 기관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악화</p> <p>가) 납부연장을 요청하는 경우</p> <p>나) 납부 연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1회 연장 이후</p> <p>5)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p> <p>6) 미납액이 30만원 미만 또는 재산조사,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행정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p>	<p>1년</p> <p>1년</p> <p>1년</p> <p>면제</p> <p>1년</p> <p>1년</p>	<p>액</p> <p>해당금액</p> <p>액</p> <p>환수하지 않음</p> <p>연장(2년 이내 1회에 한함)</p> <p>환수하지 않음</p> <p>환수하지 않음</p> <p>환수하지 않음</p>
<p>¹⁾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에서 기술료를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술료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p> <p>²⁾ 파산의 경우 법원의 채무계획 상환분의 결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 할수 있음</p>		
<p>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p>		
<p>참여제한 사유</p>	<p>제한 기간</p>	<p>출연금 환수범위</p>
<p>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p>	<p>3년 이내</p>	<p>전액 이내</p>

<p>판단되는 경우)</p> <p>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로서 기술료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p> <p>다. 부도·폐업·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¹⁾</p> <p>1) 부도, 폐업, 파산의 경우²⁾</p> <p>2) 영업장이 폐쇄·멸실된 경우</p> <p>3)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없는 경우</p> <p>4) 기관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악화</p> <p>< 삭제 ></p> <p>< 삭제 ></p> <p>5)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p> <p>6) 미납액이 30만원 미만 또는 재산조사,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행정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p>	<p>2년</p> <p>1년</p> <p>1년</p> <p>1년</p> <p>1년</p> <p>1년</p>	<p>해당금액</p> <p>액</p> <p>액</p> <p>액</p> <p>환수하지 않음</p> <p>액</p> <p>액</p> <p>환수하지 않음</p> <p>환수하지 않음</p>
<p>¹⁾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에서 기술료를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술료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p> <p>²⁾ 파산의 경우 법원의 채무계획 상환분의 결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 할수 있음</p>		
<p>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p>		
<p>참여제한 사유</p>	<p>제한 기간</p>	<p>출연금 환수범위</p>
<p>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p>	<p>3년 이내</p>	<p>전액 이내</p>

9. 그 밖에 제3조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
경장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한 협
약을 위반한 경우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 위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들 제출하지 않는 경우	3년	전액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정 산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 우(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	해당 금액
다. 부도·폐업·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비 정산 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출 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¹⁾ 1) 부도, 폐업, 파산의 경우 ²⁾	1년	해당금 액
2) 영업장이 폐쇄·폐업된 경우	1년	해당금 액
3)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환수하 지 않 음
4) 기관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악화	1년	환수하 지 않 음
가) 납부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연장(2 년이하 1회에 한함)
나) 납부 연장을 요청하지 않 거나 1회 연장 이후	1년	환수하 지 않 음
5)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환수하 지 않 음
6) 미납액이 30만원 미만 또는 재산조사, 지급명령, 강제집 행 등 행정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환수하 지 않 음
라.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 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1년	전액

¹⁾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관
에 대하여 영업장의 폐쇄·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에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
에도 정산금 또는 환수금의 징수가 현실적으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 거나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전액 이내
--	----------	----------

9. 그 밖에 제3조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
경장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한 협
약을 위반한 경우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 위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들 제출하지 않는 경우	3년	전액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정 산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 우(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	해당 금액
다. 부도·폐업·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비 정산 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출 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¹⁾ 1) 부도, 폐업, 파산의 경우 ²⁾	1년	해당금 액
2) 영업장이 폐쇄·폐업된 경우	1년	해당금 액
3)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환수하 지 않 음
4) 기관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악화	1년	환수하 지 않 음
< 삭제 >		
< 삭제 >		
5)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환수하 지 않 음
6) 미납액이 30만원 미만 또는 재산조사, 지급명령, 강제집 행 등 행정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환수하 지 않 음
라.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 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1년	전액

¹⁾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관
에 대하여 영업장의 폐쇄·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²⁾ 파산의 경우 법원의 채무계획 상환분의 결정
에 따른 금액을 정수 할수 있음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에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강제 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
에도 정산금 또는 환수금의 정수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²⁾ 파산의 경우 법원의 채무계획 상환분의 결정
에 따른 금액을 정수 할수 있음

〈 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연 락 처	(042) 481 - 4442